

제 호

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서

지정번호:

기관 또는 단체명:

대표자:

기관 소재지:

위 기관을 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직인